

2/15
14:50



보도자료

- 교통안전팀 팀 장 김 완 중
사무관 라 영 순
- ☎ 02-2110-8681~8689
- rays@moct.go.kr
- 2월 15일 배포(총 2매)

2월 1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앞으로 보험가입 없이는 자동차운행이 어려워진다.

-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 -

-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이 작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건설교통부는 번호판 영치방법 및 절차 등의 마련을 골자로 하는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」을 입법예고 하였다.
- (무보험자동차 번호판 영치) 건설교통부는 시장·군수 등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 자동차소유자의 주소·성명·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영치증을 교부하고 자동차 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,
 - 자동차보유자가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면 즉시 그 영치를 해제하고 자동차 등록관서에 지체없이 해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.

□ 그동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율이 늘어나 무보험 교통사고시 피해자 보상미비 등의 사회문제가 있었으나,

○ 이와같이 변호판 영치제도가 시행되면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고, 의무보험에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
* 의무보험 미가입율(%) : 5.1('04) → 5.3('05) → 5.4('06.11)

* 미가입 차량대수(만대) : 74('04) → 82('05) → 86('06.11)

○ 그 외에도 보험사업자들의 의무보험 계약만기 안내통지일인 계약종료 30일전, 10일전의 통지시기를 75일전~30일전까지, 30일전~10일전까지로 명확히 구체화하여 만기일을 잊어 계약갱신을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**(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운영)** 또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설치·운영하는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중 의료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규정하고,

○ 경제·경영·법률·의료 등에 관한 전문가등으로 20인 이내의 재활시설운영심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 재활시설운영의 전문성·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이번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치고 나면 보험계약 만기안내 통지 및 재활시설운영자 요건 등은 금년 하반기(6.29)부터, 변호판 영치는 금년말(12.29)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